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52 |
|----------|------|

2021년 9월 6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8월 9일, 신정호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1년 8월 18일
- 다. 상정일자: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1년 9월 6일 상정·원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신정호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최근에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와 동 조례간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 - 조례명을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로 함.
  -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
-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.
-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### 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해당없음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### 가. 개정사유

-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301회 정례회에서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를 제정하여 플라스틱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.

동 조례 제정 당시, 현행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와의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,

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조례 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,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융자심의위원회”)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타 조례와의 중복 문제 해소 등 조문 정비

- 현행 제3조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 
「자원순환기본법」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에 담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- 현행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3조의2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

최근에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## 2) 조항별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자원의 순환 이용 등을 추가한 것이고,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서울특별시의회, 지방직영기업, 출자·출연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이견 없음.
-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, 제9조 및 제10조는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모호한 조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2021년에는 6억원 규모로 운영<sup>1)</sup>하고 있음.

안 제6조와 제7조는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일관성 없이 규정되어 있는 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, 위원회 위원 임기,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른 조례의 구성 체계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---

1) 1997년에 시작된 육성자금의 지원은 2021년까지 총 121개 업체에 약 175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<br/>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<br/>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br/>-----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/>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br/>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.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<br/>나. 서울특별시의회<br/>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<br/>2. 그 밖의 용어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
2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
3. (생략)
4. (생략)
5. (생략)
6. (생략)
7. 삭제 <2007. 4. 17.>
8.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"산하기관 등"이라 한다)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

제3조 (생략)

제3조의2 (생략)

제4조(보조금 등의 지급)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

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시장-----

-----  
----- 따라 시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----- 다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-----  
-----.

1. 재활용가능자원의 -----
2.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-----  
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5. (현행과 같음)
6. (현행과 같음)
7. (현행 제8항과 같음)  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4조(보조금 등의 지급) ① -----  
-----에 따라 -----  
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, 이의 세부

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·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의2(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)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(이하 "자금"이라 한다)을 융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금의 융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자금의 융자에 대한 절차 조건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의3(융자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대상 및 금액 등을 선정·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  
-----에 따라 -----  
----- 재활용촉진 -----  
----- 개인과 단체에게 -----  
-----.

제5조(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) ① -----  
-----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재활용 -----  
-----.

② -----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 를 -----  
-----.

③ ----- 자금 융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-----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-----  
-----

1. 자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
  2.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(기획관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회의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
2.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
3.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(담당관)이 된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·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



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 
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시장은 자원의  
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 
및 산하기관 등에서 다회용품(1회용품이  
아닌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용을 촉  
진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 
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
다회용품을 세척·살균하기 위한 기구·장비·  
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 
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  
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불가피하다  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  
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  
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  
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 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, 1회용품의 사용  
억제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의6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 시장은 폐  
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 
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사  
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  
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〈삭 제〉

제8조(교육·홍보) -----  
-----  
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-----  
-----.

제9조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 시장은 쓰레  
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-----  
-----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  
제조사 등 -----  
협약-----.

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
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
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
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칙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-----.

1. ----- 발생 -----
2.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,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
3.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<삭 제>

③ -----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0조(규칙) ----- 시행에 필요한 -----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

나. 서울특별시의회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2. 그 밖의 용어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시장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
2.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
3. 자치구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5.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
6.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
7. 공공기관의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

**제4조(보조금 등의 지급)**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,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)**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(이하 “자금”이라 한다)을 융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자금 용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금의 용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
2.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(기획관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시의원"이라 한다)
2.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
3.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(담당관)이 된다.

**제7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·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8조(교육·홍보)**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자발적 협약의 체결)**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
2.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,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
3.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**제10조(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